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1-30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 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6월 4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오늘날 청소년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지역과 사회로부터 적극적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, 「청소년 기본법」에서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있으나, 어린이 날·어버이 날·스승의 날·성년의 날 등에 가려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.
- 나. 이에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정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·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규정(안 제3조)
- 다. 청소년의 날 행사 개최 규정(안 제4조)
- 라.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입장료 지원 등을 규정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활동시설”이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청소년수련시설
 - 나. 청소년이용시설

제3조(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)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동작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(이하 “청소년의 날”이라 한다)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,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.

제4조(청소년의 날 행사)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1.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
2. 청소년의 문화·예술·수련·체육에 관한 행사
3.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

4. 모범청소년,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

5.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제5조(홍보)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입장료 등 지원)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동작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